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작: ST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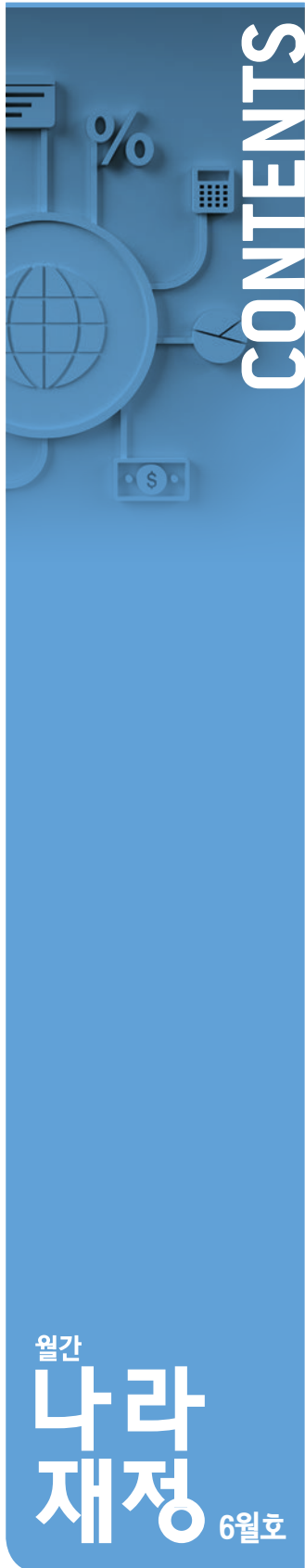


Global Finance Platform Builder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재정 전문기관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Vol.06 / Jun. 2017

기획 특집	06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 논단	16
재정관계법 현황과 향후 개선 과제	
김광묵 기획재정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재정이슈포커스	26
「2016회계연도 결산」과 결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심해인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예산성과 우수사례	34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의 낙찰차액 관리 강화	
김기창 한국재정정보원 디브레인운영본부 예산정보팀 차장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40
해외 재정 동향	48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56

MONTHLY

기획 특집 SPECIAL

기획 특집은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정책 방향 및 사업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06 /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kyc9298@korea.kr

SPECIAL



구윤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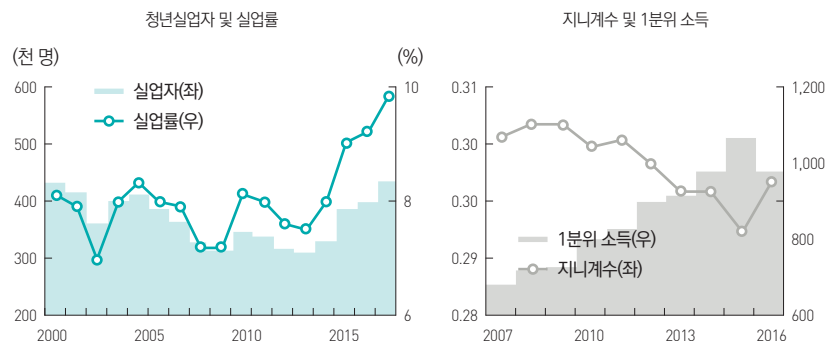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kyc9298@korea.kr

일자리 창출과
민생지원 통한
가계소득 확대와
소득분배 개선이 시급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1. 최근 경기 여건과 추경 편성 배경

최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등 일부 경기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 등 내수 회복이 아직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일자리는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실업률이 지난 4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체감실업률(17.4월 기준 23.6%)까지 고려하면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일 정도로 청년들은 고용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저소득층(1분위)의 경우 지난해 소득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¹⁾했으며, 이에 따라 지니계수(2015년 0.295 → 2016년 0.304) 등 소득분배지표도 악화되었다. 일부 지표경기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기 요인 및 고용의 구조적 요인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 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와 소득분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료 : 국가통계포털

1) 1분위 소득증가율(%) : ('13) 1.9 → ('14) 6.7 → ('15) 9.1 → ('16) △8.2

이러한 경기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6월 7일 11.2조 원 규모의 2017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이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혹자는 일자리 창출은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노동시장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을 견인하고, 침체된 민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 한편, 민간 경제 활동의 리스크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끝이 나는 말 그대로 ‘일자리 추경’이다. 청년 등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였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등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하였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서민생활 안정 사업도 일부 반영하였다.

**11.2조 원 규모의
2017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6월 7일
국회에 제출**

〈표 1〉 2017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총규모	11.2조 원	
중앙정부 직접 지출	7.7조 원	
① 일자리 창출	4.2조 원	공공 부문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재기 지원 펀드 조성 등 스타트업 및 창업 촉진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역 밀착형 일자리
② 일자리 여건 개선	1.2조 원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 소상공인 지원
③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2.3조 원	치매·의료비 등 부담 경감 주거·교육 등 생계 부담 완화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
④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장	3.5조 원	지방 자체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방 교부세 1.7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 원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은 세수 예상 증가분 8.8조 원²⁾, 지난해 세계잉여금 1.1조 원³⁾ 및 기금 여유 재원 1.3조 원으로 추경 재원 11.2조 원을 조달했다. 국민들과 미래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담해야 될 국채 발행 없이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원을 조달했다는 의미다.

2. 일자리 창출

2017년도 추경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침체된 민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 부문 일자리 중 공무원 채용을 확대한다. 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1.2만 명을 추가 채용한다. 특히, 이번 공무원 추가 채용 분야는 민생 안정 및 국민 안전 관련 분야로, 그동안 제기되어온 현장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1인당 국민수, 소방공무원 1인당 국민수 등 민생·안전 관련 공무원 수 등의 지표는 선진국 대비 열악한 수준이었다⁴⁾. 경찰 인력은 지구대, 파출소 등 현장 인력 위주로, 소방 공무원은 119구급대 탑승 인력 위주로 증원할 예정이다.

2017년도 추경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표 2〉 공무원 일자리 확충 계획

구분	세부 내용
[중앙] 4,500명	경찰관 1,500명, 부서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
[지방] 7,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족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 인력 1,500명

2) 세수 예상 증가분 8조 8천억 원은 금년 3월까지 전년 대비 5조 9000억 원 늘어난 세수 실적을 기초로 재전망한, 2017년 국세 수입 예산(242.3조 원)보다 더 많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3) 세계잉여금의 경우는 2016년 국세 수입 증가 등으로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 회계 세계잉여금(6.1조 원) 중 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및 채무 상환 후의 잔액

4) 경찰 1인당 국민 수는 2015년 기준 480명으로, 미국 259명, 독일 264명, 영국 256명 등보다 많은 편이다. 소방공무원 수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은 1인당 880명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250명에 달한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일자리도 확충해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늘릴 계획이다. 다만, 모든 직접일 자리를 늘리기 보다는 보육, 보건, 요양 등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중심으로 확충하려 한다. 우선,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을 5,000명 연내 추가 채용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 전담 인력(5,125명), 방문건강관리 인력(508명), 노인돌봄서비스(600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일자리는 현재 5,934명 규모에서 9,007명 규모로 확대된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높은 근로의욕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수요 부족을 감안하여 노인일 자리를 대폭 확대할 계획(+ 3만 명)이며, 임금 수준도 현행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한다.



〈표 3〉 사회서비스 등 직접일자리 확충 계획

구분	세부 내용
보육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시간제보육교사 40명 등
보건	치매관리 5,125명, 방문건강관리 508명, 의료급여관리 96명 등
요양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정신요양시설 운영 59명 등
사회복지·장애인 등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80명, 장애인 활동 지원 1,000명, 산림재해 일자리 4,000명 등
노인	노인일자리 30,195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사업 확대

이밖에도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도 크게 확대하였다. 특히, 대기업의 고용 창출 여력이 감소하고, 대기업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성장 및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사업 예산을 크게 확대하였다. 우선,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였다. 이 외에도 4차 산업 혁명 등 고성장산업에 대한 융자 자금, R&D 분야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투자도 확대된다.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산업혁명 전용 펀드가 4,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창업 실패자가 재창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을 위한 투자 보증 제도도 확대된다. 폐업자 재기지원 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신설하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자금 출연을 통해 연대 보증도 면제할 계획이다.



〈표 4〉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계획

구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재기 지원 펀드	신용보증 및 기술 보증 자금 지원	경영안정 자금 확대	4차 산업 혁명 펀드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추경안	총 1.5만 명 창출	+ 3,000억 원	+ 200억 원	+ 600억 원	4000억 원 신설	+ 1,000억 원

3. 일자리 여건 개선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일자리 여건도 개선해 세대간 일자리 격차, 소득 불평등, 취약한 여성 근로환경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체감 고용여건이 열악한 청년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취업 준비 활동을 지원한다. 1단계 상담, 2단계 직업훈련, 3단계 알선을 패키지로 종합 지원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을 현행 31.6만 명에서 36.6만 명으로 5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현행 취업성공패키지 1, 2단계 지원내용 외에 3단계 알선 과정에서도 월 30만 원 씩 3개월간 지급되는 구직 촉진수당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에서 종사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한다. 근로자, 중소기업, 정부가 각각 1:1:2로 공동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 재직 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제공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⁵⁾ 대상 인원이 확대됨은 물론 만기 적립금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인상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한다. 이밖에도 청년 창업 펀드 확대, 창업기업 융자, 창업사업화 지원, 창업 매니저 등 창업 지원 역시 강화되고, 창업사업화를 위해 기술 창업 지원프로그램⁶⁾ 등도 확대된다.

여성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 우선 소득 감소 때문에 육아 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여성들을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보다 약 2배 확대하고⁷⁾,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현행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금년 당초 계획이었던 180개소에서 36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경력 단절 여성

청년 취업지원,
여성 근로환경 개선 등
일자리 여건 개선

을 위해서는 새일센터 내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 등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직업 등 전직이 용이하도록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하였다.

이밖에도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현행 1.6조 원에서 2.2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이 포화상태인 업종의 경우에는 손쉽게 유망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표 5〉 일자리 여건개선 지원 계획

구분	취업성공 패키지	내일채움 공제	육아휴직 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추경안	+ 5만 명 구직촉진수당 신설	+ 1만 명 + 400만 원	현행 대비 2배 인상	180개소 추가	취업설계사 등 80명 증원	+ 0.6조 원

치매 환자 돌봄 등
서민 생활 안정 지원
사업 확대

4.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이외에도 일자리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서민생활 안정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치매환자를 돌볼 계획이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인구 규모도 점차 커지고⁵⁾ 이에 따른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치매환자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치매 안심센터 252개소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45개소 확충하는 등⁶⁾ 총 2,023억 원을 추경안에 포함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5) 근로자 납입금은 300만 원, 중소기업 기여금은 300만 원, 정부 취업지원금은 600만 원이다. 2년 연속 시 1,200만 원에 복리이자를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6)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은 지원기업에 대해 정부와 민간투자자를 매칭,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7) 현재 육아휴직급여 제도 하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30일 이상의 육아 휴직일을 사용 시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번 추경안의 제도 변경을 통해 급여액이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주거 지원 등도 확대한다. 우선, 생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생 수를 현행 3.7만 명에서 4.4만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심내 역세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2,700호)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수급자 또는 부양 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를 면제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 따라 총 4.1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지원액은 연 91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구분	치매안심센터	근로장학금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추경안	+ 205개소	+ 7,000명	+ 2,700호	+ 4.1만 가구 (수급자·부양 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 중증장애인 포함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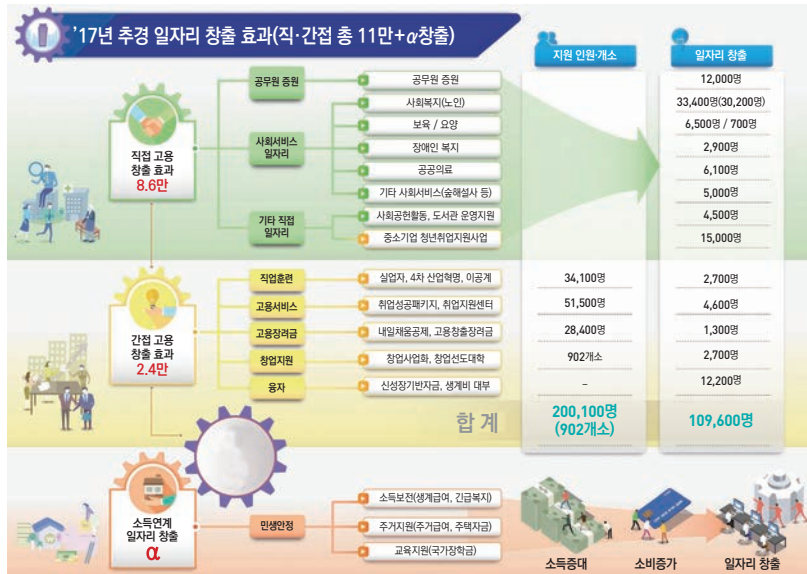
학자금, 주거지원
확대로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

그리고 국세 수입 증액 경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되는 3.5조 원은 지방 자치단체의 추경 사업 및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활용되며, 중앙정부도 이들 사업에 적극 협조하면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금번 추경안의 일자리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와 매칭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8) 제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15)에 따르면 치매 노인 인구가 2010년 47만 명, 2015년 64만 명으로 증가했고 2050년에는 270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9) 치매안심센터는 47개소에서 252개소로, 치매안심병원 34개소에서 79개소로 확대된다.

5. 기대효과



**이번 추경안 시행으로
11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

이번 추경안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약 8.6만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1.2만 명, 사회서비스 2.4만 명, 노인일자리 3만명 등 공공일자리가 약 7.1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일자리로는 약 1.5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고용 장려금, 고용 서비스, 창업 지원 등을 통한 간접 고용창출효과 2.4만 명까지 포함하면 이번 추경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약 11만 개로 추정된다.

2017년 추경안은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일자리가 확대되면 가계소득도 증대되고 이를 통한 소비 촉진과 투자 확대 등 우리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경기 회복세도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세입 기반 확충에도 기여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일자리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는 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진행할 것이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MONTHLY

재정 논단 OPINION

재정 논단은 정보와 정책 진단 및 제언 등
재정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재정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장입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16 / 재정관계법 현황과 향후 개선 과제

김광목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csismook@gmail.com

OPINION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csismook@gmail.com

**재정활동은 강제성과
규율 측면에서
민간 경제활동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이는 법체계로 이어짐**

재정관계법 현황과 향후 개선 과제

1. 재정관계법의 체계

저성장·저출산·고령사회 등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보육·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재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재정(財政)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재정을 정부가 재원을 조달·관리·지출하는 일련의 경제 활동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성이 매우 높고, 공공기관이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많으며 최종적인 재정 책임을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게 된다. 따라서 광의의 재정은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행하는 재원 조달·관리·지출 활동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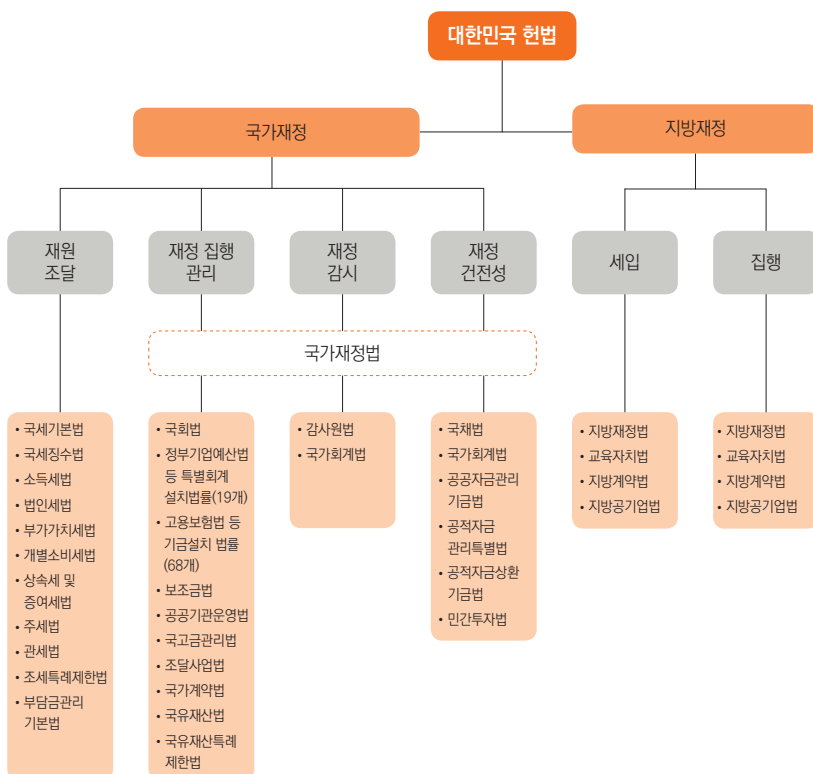
재정 활동이 민간의 경제 활동과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지점은 강제성과 규율이다. 사적인 경제거래에서 재원이 조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행하는 강제적인 재원 조달에 기초하여 운용되므로 민간경제 활동에 비하여 감독이 강할 수밖에 없다.

강제성과 규율은 이에 관한 법체계로 이어진다. 재정관계법은 국세수입과 세외 수입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재원 조달 관계법, 조달된 재원을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을 통하여 배분하고 집행하는 재정 집행관리 관계법, 재정에 대한 통제인 재정 감시 관계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 활동의 결과로 미래세대로의 부담 전가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관계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독립적인 지방자치재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8조에서 납세의 의무,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에서 예산안의 심의 등 절차, 제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 제117조에서 지방자치 재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을 토대로 국가재정의 기본법으로 제정된 것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재정법」이다. 동 법에서는 중앙 정부 예산·기금의 편성·집행·결산·성과관리·재정건전성 등을 규율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에 대해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 등이 제정되어 있고, 집행 분야에서는 지방재정법·지방계약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국가재정법은 헌법을 토대로 한 국가재정의 기본법



2. 재정관계법의 현황

가. 재원 조달 관련 법률

(1) 국세 수입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관세법」에 따른 관세와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법」이 정하고 있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이 정하는 개별소비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세·증여세, 「주세법」이 정하는 주세가 포함된다.

조세감면은 일정한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여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되나, 세수 손실·형평성 논란·세제 복잡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무분별한 조세 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세외 수입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 외로 부과하는 부담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다. 동법 별표에는 90개의 부담금이 규정되어 있고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의 설치는 제한된다.

나. 재정집행관리 관련 법률

(1) 예산·기금 운용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안 편성은 기재부장관의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 각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 제출, 예산안의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는 기금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한편, 동 법은 예산 배정의 방법,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이·전용 및 이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구분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동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특별회계는

재원 조달 관련 법률로
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다양

「정부기업예산법」 등 19개 개별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고, 기금은 「고용보험법」 등 68개 개별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국회법」에서는 예산안·기금 운용 계획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예산안 등의 회부 및 심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기금 운용 분야의 개별법으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정이 일정 수준 이상 투입되는 기관 등을 공공 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사·경영·예산 등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조달·계약·국고관리

「국고금관리법」은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된 현금 등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에 적용된다. 「물품관리법」은 국가가 소유·보관하는 동산 등 국가 물품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소관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조달 물자의 구매·공급·품질관리 등 조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국유재산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특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 재정 감시 관련 법률

결산은 정부의 결산보고서 작성·제출, 감사원의 결산 검사 및 국회의 결산 심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정부의 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 및 「국



국가재정법, 국회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등에서
각각 집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가회계법」에 따라 작성·제출된다. 「국가재정법」은 결산의 원칙으로 유용성, 적정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회계법」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헌법은 감사원이 결산검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근거하여 회계검사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확인한다.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결산보고서를 접수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심사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결산을 심의·의결하며, 결산을 심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감사원법, 국회법 등에서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재정건전성 관련 법률

「국가재정법」은 정부에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통하여 재정수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회계법」에서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 통합수지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채법」은 국가가 발행한 국채의 발행·등록과 원금 상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은 국고채 통합 발행을 통해 회계·기금의 필요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공적자금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한편,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 지급금 부담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사용 시설별 한도액·예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있다.

마. 지방재정 관련 법률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정은 일반행정에 대한 자치를 관할하는 일반재정과 교육에 대한 자치를 관할하는 교육재정으로 구별된다. 지방재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교육재정에 관련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별도로 경리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 요건 및 세율 등은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11개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재정법은 정부에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적정수준
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일정 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지자체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의 조직·예산편성·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업무의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

3. 재정관계법의 향후 개선 과제

현행 헌법의 재정 조항에
실체적, 구체적인 조항을
규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

가. 헌법 개정 논의

현행 헌법의 재정 조항에 재정 운용에 관한 실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헌법의 재정 조항이 예산안의 편성 및 심의·준예산·계속비·예비비·추경예산안 등의 절차 규정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의 재정 조항을 묶어 별도의 장으로 두고 재정총계주의의 명시, 기금의 헌법적 근거 마련 등 더욱 구체적인 재정 조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국회의 헌법개정특위에서는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을 법률로 만드는 것으로 예산의 법규범성을 명확히 하고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예산집행의 경직성이 급격하게 증가되며 법률형태의 예산안 편성·심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으므로 더욱 심도 깊은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국가재정법 개정 논의

「국가재정법」은 2007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첫째,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하는 재정의 범위 및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지방정부채무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동 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등에 관한 정의 규정도 없다. 또한 예산과 관련한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기금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산 심사 내용이 예산안 심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 제출 기한을 앞당기자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결산의 조기 제출은 일정을 조정하는 데 따른 실무적 어려움이 있고, 2011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10년 동안 국회가 「국회법」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준수한 적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추경예산의 편성 요건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예산의 경기조절기능을 강조하며, 헌법 제56조에서는 추경예산안 편성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 제89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법체계 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반면 추가경정예산 남발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 ‘경기침체’ 등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넷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의 마련과 pay-go원칙의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재정준칙에 따른 복지지출축소 우려, 최적 재정준칙의 수준, pay-go 법제화에 따른 입법권의 제약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 밖에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수시 배정·배정유보사업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을 포함하여 재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명확한 재정 범위 및
정의 규정, 추경예산의
편성요건 개정,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법과 관련된
다수의 과제 존재**

MONTHLY

재정이슈포커스 ANALYSIS

재정이슈포커스는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진들이
재정 현안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장입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26 / 「2016회계연도 결산」과
결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심혜인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hyein@kpfis.kr

ANALYSIS



심혜인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hyein@kpfis.kr

「2016회계연도 결산」과 결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지난 5월 31일, 정부는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후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받아 수정반영한 것으로, 「국회법」은 이를 9월 1일(정기회 개회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산은 예산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회계 연도 내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의 국회심의를 결은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집행 책임을 해제시키는 역할을 하며, 결산의 결과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우리나라 결산제도를 살펴본 후에, 결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수입 401.8조 원,

총지출 384.9조 원

1. 「2016회계연도 결산」 현황

총수입·총지출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수입은 401.8조 원으로 당초 본예산(391.2조 원) 대비 10.6조 원, 추경 대비 0.8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전년 대비 증가폭은 30.0조 원으로 국세수입과 기금은 각각 24.7조 원, 5.4조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전년 대비 0.1조 원 감소하였다.

총지출은 본예산(386.4조 원) 대비 1.5조 원, 추경 대비 13.6조 원 감소한 384.9조 원을 집행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일반회계가 11.1조 원, 기금이 4.9조 원 증가하는 등 총지출은 전년 대비 12.9조 원이 증가하였다.

1) 2016년 정부는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2015년에 이어 총 11.0조 원(세출 확대 9.8조 원, 국가채무 상환 1.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

〈표 1〉 2016회계연도 총수입·총지출 결산 결과

(단위: 조 원)

구 분	2015년			2016년			전년 대비 (D-B)
	예산 (A)	결산 (B)	예산 대비 (B-A)	추경 (C)	결산 (D)	추경 대비 (D-C)	
I. 총수입	377.7	371.8	-5.8	401.0	401.8	0.8	30.0
1. 국세	215.7	217.9	2.2	232.7	242.6	9.8	24.7
2. 세외 수입	28.3	23.7	-4.6	27.2	23.5	-3.6	-0.1
3. 기금	133.6	130.2	-3.4	141.1	135.6	-5.5	5.4
※ 세입세출 외*	-	0.05	0.05	-	0.13	0.13	0.07
II. 총지출	384.7	372.0	-12.7	398.5	384.9	-13.6	12.9
1. 일반회계	210.5	206.0	-4.6	221.7	217.1	-4.6	11.1
2. 특별회계	53.0	50.9	-2.2	49.6	47.6	-2.0	-3.2
3. 기금	121.1	115.0	-6.1	127.3	119.9	-7.3	5.0
※ 세입세출 외**	-	0.2	0.2	-	0.3	0.3	0.1

* 국고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 **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주: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 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

2. 구성 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7. 5.

총세입은 345.0조 원으로 예산 대비 3.0조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총세출은 332.2조 원(총세입의 96.3%)으로 예산 현액 대비 95.5%가 집행되었다. 따라서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2.8조 원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4.8조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8.0조 원이 발생하였다.

한편, 고용보험기금 등 65개 결산 대상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643.0조 원으로 운용 계획 대비 16.9조 원, 전년도 대비 59.7조 원 증가하였다.

〈표 2〉 총세입·총세출 및 기금 결산 현황

(단위: 조 원)

구 분		'15년	'16년	증 감
회계 (일반·특별)	총세입(A)	328.1	345.0	16.9
	총세출(B)	319.4	332.2	12.8
	차년도 이월액(C)	5.9	4.8	-1.2
	결산상잉여금(A-B)	8.7	12.8	4.0
	세계잉여금(A-B-C)	2.8	8.0	5.2
기금	수입·지출	583.2	643.0	59.7

주: 구성 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7. 5.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8.0조 원 발생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016년에는 법인 실적 개선, 소비 증가, 부동산시장 호조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정부의 세입 기반 확충 노력으로 세수가 초과 달성됨에 따라 재정수지가 개선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²⁾는 추경 대비 14.4조 원, 전년 대비 17.1조 원 개선된 16.9조 원(GDP 대비 1%) 흑자를 시현하였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추경 대비 16.3조 원, 전년 대비 15.3조 원 개선된 22.7조 원 적자(GDP 대비 -1.4%)가 발생했다.³⁾

〈표 3〉 2016회계연도 재정수지 결산 결과

(단위 : 조 원)

구 분	2015년			2016년			전년 대비 (D-B)	GDP 대비 비율(%)
	예산 (A)	결산 (B)	예산 대비 (B-A)	추경 (C)	결산 (D)	추경 대비 (D-C)		
1. 통합재정수지	-7.0	-0.2	6.8	2.5	16.9	14.4	17.1	1.0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9.5	37.8	-1.8	41.5	39.6	-1.9	1.8	2.4
3. 관리재정수지(1-2)	-46.5	-38.0	8.6	-39.0	-22.7	16.3	15.3	-1.4

주 : 구성 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7. 5.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15.3조 원 개선

2016년말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추경예산 대비 11.3조 원 감소, 전년 대비 35.4조 원 증가한 591.9조 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6%p 증가한 36.1%다.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되며 그 중 국채가 587.5조 원으로 99.3%를 차지하는데, 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가 31.2조 원을 차지한다. 성질별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전년보다 29.0조 원 증가한 324.9조 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54.9%를,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 채무는 전년보다 6.4조 원 증가한 260.7조 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45.1%를 구성하였다.

2)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또는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을 차감)하여 구한다. 총수입총지출과 통합재정수입지출은 모두 정부의 회계기금을 통합한 후 내부거래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하지만 용자 및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를 각각 총계와 순계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총수입총지출의 규모가 통합재정수입지출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두 지표를 통해 산출되는 재정수지는 동일하다.

3)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성 기금은 초기단계로 아직 연금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큰 폭의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재정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표 4〉 국가채무 규모와 증감 추이

(단위 : 조 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A)	'16년 (B)	증감 (B-A)
국가채무(지방자치단체 제외*) (GDP 대비)	425.1 (30.9)	464.0 (32.5)	503.0 (33.9)	556.5 (35.6)	591.9 (36.1)	35.4 (0.6%p)
▶ 국 채	420.0	459.5	498.1	551.5	587.5	36.0
- 국고채권	362.9	400.7	438.3	485.1	516.9	31.8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7.6	7.5	7.0	7.1	6.7	-0.5
- 국민주택채권	49.5	51.3	52.8	59.3	64.0	4.7
▶ 차입금	2.3	1.9	2.6	3.3	3.9	0.6
- 국내 차입금	1.8	1.7	2.5	3.2	3.9	0.7
- 해외 차입금	0.6	0.1	0.1	0.0	-	0.0
▶ 국고채무부담행위	2.8	2.7	2.4	1.7	0.5	-1.3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 채무로서 지방정부 부문의 제외

주 : 구성 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7. 5.

2016년말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591.9조 원
으로 GDP의 36.1%에
해당

2. 국가결산의 과정

국가재정의 결산과정은 출납사무의 완결,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국회의 결산심의의결의 순서를 따른다. 출납사무의 완결이란 한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입금의 수납행위와 지출금의 지급행위를 종료하고 국고금 출납 장부를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되어야 한다.

출납장부가 마감되면 「국가회계법」에 따라 기금 관리 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 재산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하는 회계 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송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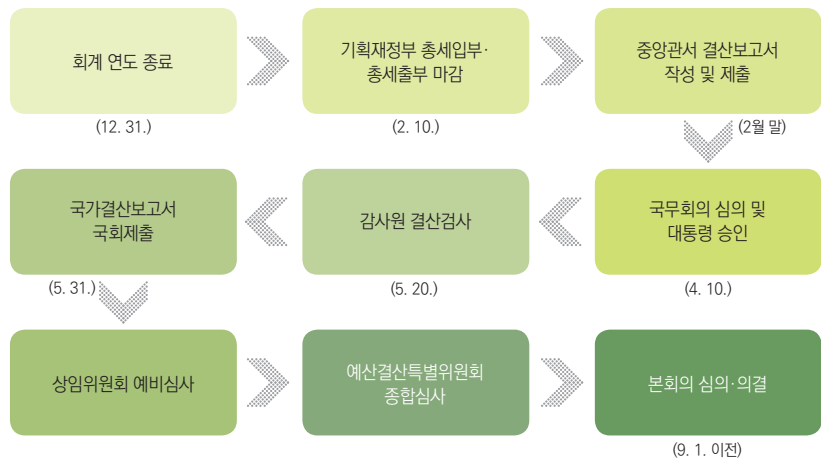


결산과정은
출납사무의 완결 → 국가
결산보고서 작성제출 →
국회의 결산심의의결의
순서를 따름

그러면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결산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 심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는데,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9월 1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1. 국가결산의 절차



3. 실효성 있는 결산제도의 운영

결산이란 회계 연도 내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의 마무리 과정에 해당한다. 한 회계 연도의 예산 과정은 ‘예산안 편성(정부)→예산안 심의·확정(국회)→예산 집행(각 부처)→회계검사(감사원)→결산 승인(국회)’의 절차를 따른다. 따라서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완결되어야 예산과정이 종결되며, 이로써 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이 최종적으로 해제된다.

결산은 회계 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작성된 사후적 재정보고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결산 보고서가 산출되는 과정에는 재정활동의 결과를 검토하는 회계검사의 단계가 포함되며 이후 국회의 사후 심사가 따른다. 이를 통해 예산과 결산의 일치 여부 또는 예산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나아가 예산 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다음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 환류시킬 수 있는 정보가 산출된다.⁴⁾

결산결과는 차년도
예산의 편성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결산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을 점검하여 다음 연도 예산의 편성·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결산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사후적인 결과 보고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는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제16대 국회는 시정 요구 및 감사 청구(2010년 감사 요구로 개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국회는 결산의 심사결과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국회의 정부 결산 심사에 따른 시정 요구는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2,061건에 달한다. 이들 시정 요구는 대부분이 시정, 주의 및 제도 개선에 해당되는데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 미완료 건수의 비율은 10~20%, 반복 시정 요구 건수의 비율은 10~15%의 수준을 보이고

4)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2.0」, 대영문화사, 2014.

있다.⁵⁾ 또한 국회는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감사 요구는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5건 내외로 발생한다.

한편, 결산의 환류 기능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산 심사 결과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부터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산 심의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은 대체로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해당된다. 「국가재정법」은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에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안은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제출토록 되어있다. 따라서 결산이 법정 기한인 8월 31일에 의결된다 할지라도 예산안의 편성 과정에 반영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⁶⁾ 뿐만 아니라 국회는 실상 결산 심사를 법정 기한 내에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국회의 결산 심사가 법정 기한 내에 완료된 해는 2011년 이 유일하다. 2011년 당시에도 법정 기한 마지막 날(8월 31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3년에는 예산안 의결 시한을 4일 앞둔 11월 28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결산심사의 사후조치 미흡, 법정기한 미준수 등으로 결산 환류의 한계

〈표 5〉 결산보고서 제출일과 의결일 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정부 제출일	5. 31	5. 30	5. 28	5. 28	5. 30	5. 31	5. 31	5. 30	5. 29	5. 31
본회의 의결일	10. 8	11. 24	9. 29	10. 1	8. 31	9. 3	11. 28	10. 2	9. 8	9. 2
법정 기한 초과일수	38	85	29	31	0	3	88	32	8	2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5) 시정 요구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6) 「헌법」 제54조 제2항은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개정된 「국가재정법」 제33조에서는 이보다 30일 앞선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산의 목적은 예산안을 심의·확정한 국회의 취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결산 심사의 사후 조치 부족,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중복되는 결산 심사 일정, 국회의 법정 기한 미준수 등으로 인해 결산의 환류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의 경우에도 6월 임시국회는 인사청문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으로 조속한 결산 심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용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결산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회의 시정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는 조속한 심사를 통해 결산의 결과가 국정감사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시정요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조속한
심사로 결산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참고 문헌

- 국경복, 「재정의 이해」, 나남, 2015.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결산심사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
 민간 기업 및 해외 주요국 결산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5. 12.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2017. 5. 31.
 대한민국정부,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7. 5.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2.0」, 대영문화사, 2014.



김기창

한국재정정보원
디브레인운영본부
예산정보팀 차장
kichang.kim@kpfis.kr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의 낙찰차액 관리 강화

- 시간_2017년 5월 29일 오후 2시
- 장소_한국재정정보원 20층 회의실

디브레인(dBrain)은 예산의 편성·집행, 자금 및 국유재산 관리, 결산, 성과 관리 등 전 과정을 포괄·지원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연간 6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1억 건이 넘는 재정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주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추진 시 낙찰차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업비의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시스템 개선에 기여한 한국재정정보원 예산정보팀 김기창 차장을 만나 구체적인 개선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디브레인(dBrain) 운영본부 예산정보팀 김기창입니다. 제가 속한 예산정보팀은 디브레인 사업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재정사업의 예산 편성 및 배정과, 마지막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 디브레인 시스템의 초기 구축 단계부터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8년 정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기획재정부와 함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의 낙찰차액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디브레인(dBrain) 기능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금번 2017 예산성과금 우수 사례로 선정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 정부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총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 및 관리하도록 하는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1989년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사업 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사업 가운데 ①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②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 ③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연구 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 기반 구축 R&D 사업으로 정의됩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2016년 기준 912건이며, 총 규모는 25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표 1〉 총사업비 현황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사업수 (건)	918	909	912
규모 (조 원)	258.9	253.7	249.3

Q 디브레인(dBrain)의 기능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통상 입찰계약 결과 발생하는 낙찰차액에 대한 관리는 시스템 미비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낙찰차액을 의무적으로 감액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능 개선 전 디브레인시스

과거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추진시
낙찰차액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미비



템은 공사비 낙찰차액 발생 시 감액을 강제하는 장치가 구현되어 있었으나, 이는 최초 공사 계약에만 해당될 뿐 2차, 3차 계약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에 대한 입력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대, 설계, 감리 등 다른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낙찰차액에 대해서도 입력이 강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시행한다고 가정해보면, 이와 같은 대규모 공사는 서울~천안, 천안~대구, 대구~부산 구간 등 구간별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과거에는 1차 공사 구간(서울~천안) 계약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은 디브레인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했으나, 나머지 구간 공사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소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입력하였습니다. 부대, 설계, 감리 등 여타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낙찰차액에 대한 입력 역시,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사업의 최초 계약 이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낙찰차액 감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발주하고 부족분은 낙찰차액으로 충당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낙찰차액을 감액하지 않는 경우 기본 경비, 시설부대비 삭감 등 재정적 제재를 가하거나 관련자 주의, 경고 조치 등 인적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으나,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담당: 김찬용 사무관)에서는 과거 감사원 지적 사례였던 낙찰차액의 유용 사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후 실효성 있는 사전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능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Q 구체적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의 어떠한 기능을 개선하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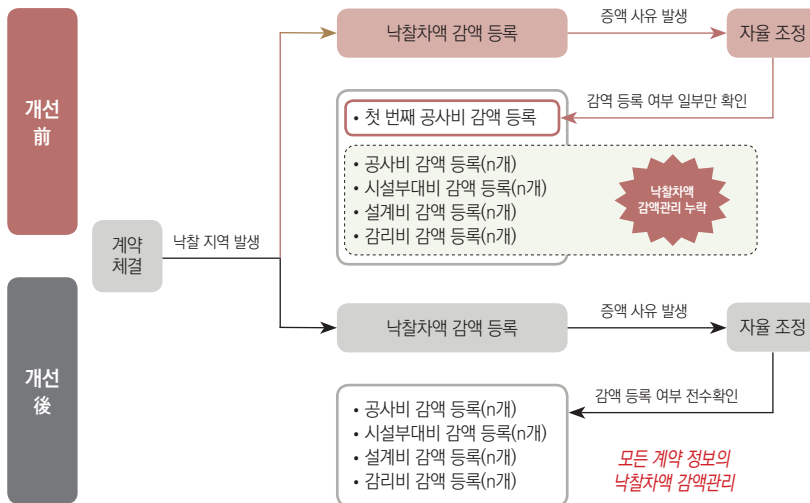
A.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낙찰차액 등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관리 대상 사업의 모든 계약건에 대하여 낙찰차액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력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계약별 낙찰차액을 감액하지 않을 경우 총사업비의 자율 조정¹⁾이 불가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1) 계약 체결 이후 시공 중 일정한 설계 변경 항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중앙관서장 책임하에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

**관리 대상 사업의
모든 계약건에 대한
낙찰차액 등록을 의무화
하고 이력관리를 강화**

그림 1. 총사업비 제도 개선 前·後 비교



둘째, 계약 정보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계약번호, 계약명, 실계약일, 예정가, 계약가 등 계약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력 항목별로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낙찰차액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등록한 낙찰차액이 계약 체결 화면에서 먼저 등록한 낙찰차액과 불일치하거나 미등록하는 경우 이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검증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계약 정보 관리 강화 및
낙찰차액 검증기능을 강
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 노력 시행

그림 2. 조정 요구 등록 - 낙찰차액 비감액 시 등록 불가

변경현황 | 변경요구 | 세부사업 | 첨부파일

총사업비 변경요구 (단위: 백만원)

구분	종류	국고	지자체	민자	기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예비비
						주 공 사 비	법 정 공 비	직 접	간 접	무 상 사 용 분	설 계 비	감 리 비	시 설 부 대 비	기 타 관 리 비				
현행	5,351.28	1,093.0	100	0	4,258.0	4,092.3	0	962.877	0	0	142.847	146.260	6.880	100	0			
증감	10	0	10	0	0	0	0	0	0	0	10	0	0	0	0			
변경 후	5,351.28	1,093.0	110	0	4,258.0	4,092.3	0	962.877	0	0	142.857	146.260	6.880	100	0			
전액공사비						한도액(내)					한도액(외)					합계		
						9.998					10					10		

추가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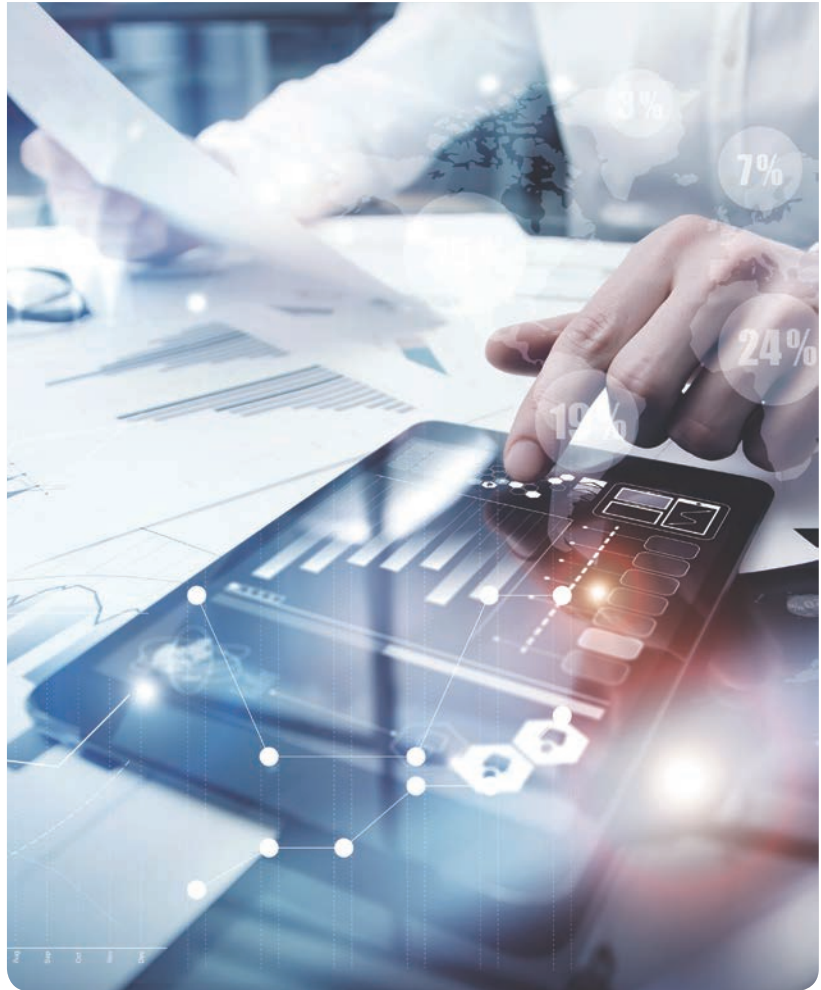
계약구분	계약	총사업비 변경유형		현행	순증금액		조정후금액			
		종분류	세분류		요구	조정(소관)		조정(기재부)		
1	[31] 설계비	[3333] 서울세종	안전시설 설치	안전시설 보강	지선유도표지	0	10	0	0	10

JavaScript: 확인

낙찰차액 등록대상인 계약구분의 계약에 대한 등록된 낙찰차액 이력이 없습니다. 먼저 낙찰차액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시스템 개선 결과
낙찰차액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총사업비
감액 금액은 증가하는 등사
업비 절감에 크게 기여



Q 낙찰차액 감액 강제 장치로 인한 재정 측면에서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A. 2016년 9월 1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의 4개월 간 낙찰차액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2건(전년 동기 대비 11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총사업비 감액 금액은 7,07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96억 원(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3,587억 원은 제도 개선에 의한 낙찰차액 감액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이 사업비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말씀하신 것을 듣다 보니, 최근의 업무 성과로 인해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개선 사항 이외에도 추가적인 업무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현재까지의 제도 개선은 주로 발생한 낙찰차액을 제대로 입력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계약 정보 및 낙찰차액 사용에 관한 이력관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해 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디브레인과 조달청 나라장터와의 실시간 계약 정보 연계를 통해 낙찰차액 및 총사업비 잔액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즉 나라장터에서 계약이 확정되는 동시에 계약 내용과 낙찰차액이 자동으로 디브레인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고, 체계적인 낙찰차액과 총사업비의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달청 나라장터와의 실시간 계약 정보 연계를 낙찰차액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



디브레인시스템 개선에 기여한 디브레인운영본부 예산정보팀원들

보조금 어디에 쓰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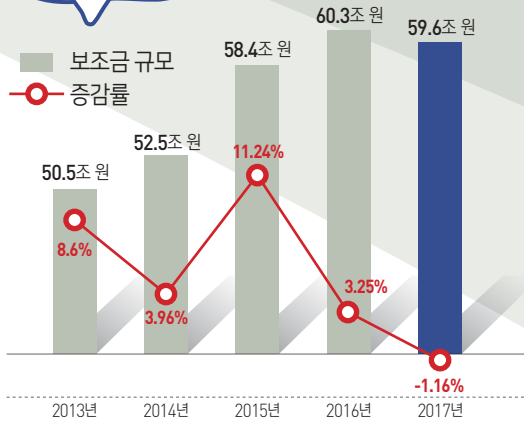
분야별 보조금
현황 소개

- 1 사회복지
- 2 농림수산
- 3 문화 및 관광
- 4 환경
- 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6 교통 및 물류
- 7 기타



2017년 보조금 예산액 **59.6조 원**

보조금 차이



2017년
예산대비
보조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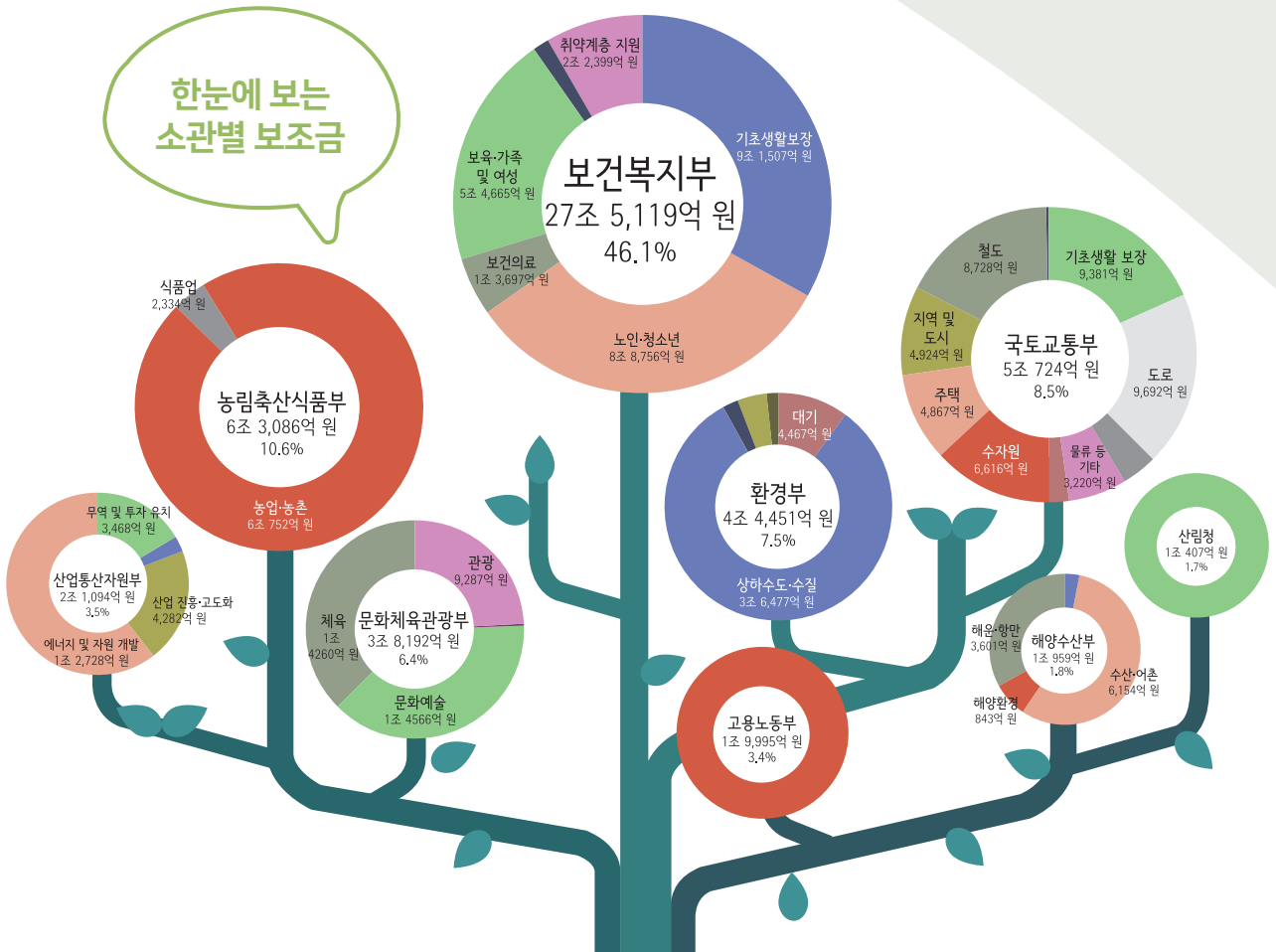
보조금 —
59.6조 원

14.9%



정부 예산
400.5조 원
100%

한눈에 보는 소관별 보조금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에 재정상의 도움을
주는 것

1. 국고보조금의 개념

e나라도움의 ‘국고보조로 희망을, 투명관리로 믿음을’¹⁾이란 슬로건처럼 희망과 믿음을 주는 국고보조금이란 무엇일까? 관련법에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의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²⁾을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의 도움을 주는 것이다.

보조금 정의에서 보듯이 보조금은 부담금·교부금·조성비·장려비·위탁금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실무적인 명칭으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2.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 이전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두 제도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와 지방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일정한 행정 수준의 확보나 시책의 장려 등을 위한 정책 수단이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지원(교부, 부담, 보조)하는 제도이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중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총 교부금액 중 일부는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금액을 조정하여 교부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려는 제도다. 또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포함)으로 이전되는 교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슬로건 공모 대상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의

부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국세의 20.27%를 교부하고 있다.

〈표 1〉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교

구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원 보장 및 재정불균형 완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 균형 발전
재원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	내국세의 19.24%	내국세의 20.27%
재원성격	특정 목적 재원	용도 지정 없는 일반 재원	용도 지정 없는 일반 재원
배정	사업별 용도 지정, 지방비 확보 의무	재원 부족액 기준배정	

자료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보고서」, 20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용 저자 추가.

’17년 국고보조금
규모는 59.6조 원

3. 국고보조금의 종류

보조금은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구분할 수 있는데, 보조금 지원 대상에 따라 자치단체보조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시설 운영이나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내용으로 보면, 인건비·운영비·여비·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에 대한 경상적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과, 토지 매입비·시설건축비·자산 취득 등을 위한 자본적 경비를 지원하는 자본보조금으로 구분된다.

4. 국고보조금의 현황

2017년 국고보조금은 59.6조 원이며,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잠시 주춤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4.0%이나 국고보조금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4.2%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보조금은 2013년 37.8조에서 2017년 59.6조로 연평균 5.3% 증가하는 동안 민간보조금은 1.0% 증가하였다. 자치단체보조금 비중이 확대되는 주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중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의 의무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2〉 국고보조금 규모 및 정부 예산 추이

(단위 : 조 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국고보조금	50.5	52.5	58.4	60.3	59.6	4.2
자치단체 보조 (비중)	37.8 (74.9)	40.0 (76.2)	45.1 (77.2)	46.0 (76.3)	46.4 (77.9)	5.3
민간 보조 (비중)	12.7 (25.1)	12.5 (23.8)	13.3 (22.8)	14.3 (23.7)	13.2 (22.1)	1.0
총지출	342	355.8	375.4	386.4	400.5	4.0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4.8	14.8	15.6	15.6	14.9	0.2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당초 예산 기준), 2017. 5. 23.

*기획재정부, 「20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16

'17년 국고보조금 중 보건복지부 소관이 27.5조 원으로 가장 많음

2017년도 국고보조금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27.5조 원으로(〈표 3〉 참고)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30.6조 원으로(〈표 4〉 참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26.1조 원(85.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국고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8.1조 원 지원되는 노인 복지 지원사업(노인생활 안전)과 4.8조 원 지원되는 의료급여 지원사업(기초생활 보장)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금은 6.3조 원으로(〈표 3〉 참고) 우리나라 부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고보조금을 소관하고 있다. 이 역시 농림수산 분야 국고보조금이 8.2조 원으로(〈표 4〉 참고) 분야별 국고보조금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농림수산 분야 중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은 6.3조 원(77.1%)을 소관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사업에는 1.1조원 지원되는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농가 경영 안전)과 1조원 지원되는 일반 농산어촌개발 지원사업(농촌 지역 개발 및 도농 교류 활성화) 등이 있다.

〈표 3〉 2017년 부처 소관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억 원, %)

소관	금액	비율	소관	금액	비율
보건복지부	275,118.6	46.1	법무부	1,532.5	0.3
농림축산식품부	63,086.0	10.6	외교부	1,316.6	0.2
국토교통부	50,723.9	8.5	국방부	965.6	0.2
환경부	44,451.2	7.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22.3	0.2
문화체육관광부	38,192.1	6.4	식품의약품안전처	805.8	0.1
산업통상자원부	21,094.0	3.5	특허청	599.8	0.1
고용노동부	19,994.6	3.4	경찰청	411.7	0.1
해양수산부	10,959.0	1.8	대법원	292.2	0.0
산림청	10,406.5	1.7	방송통신위원회	178.5	0.0
중소기업청	8,158.3	1.4	국회	103.0	0.0
국민안전처	7,728.6	1.3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100.0	0.0
통일부	7,429.4	1.2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79.4	0.0
여성가족부	5,772.8	1.0	방위사업청	66.3	0.0
행정자치부	5,693.5	1.0	새만금개발청	44.6	0.0
미래창조과학부	5,658.5	0.9	금융위원회	14.9	0.0
문화재청	4,495.8	0.8	공정거래위원회	10.9	0.0
기획재정부	3,647.6	0.6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3	0.0
교육부	2,673.8	0.4	국민권익위원회	1.9	0.0
농촌진흥청	1,767.3	0.3	국가인권위원회	1.2	0.0
국가보훈처	1,717.0	0.3	계	596,221.7	100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 재정(openfiscaldata.go.kr), 2017. 5. 23.

’17년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 분야가
30.6조 원으로 가장 많음

〈표 4〉 2017년 분야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억 원, %)

분야	금액	비율	분야	금액	비율
사회복지	306,429.2	51.4	공공질서 및 안전	9,637.7	1.6
농림수산	81,775.1	13.7	통일·외교	8,825.4	1.5
문화 및 관광	45,693.1	7.7	일반·지방행정	7,876.0	1.3
환경	45,294.5	7.6	통신	1,790.6	0.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9,286.3	4.9	교육	1,398.0	0.2
교통 및 물류	28,916.9	4.9	국방	1,031.9	0.2
보건	14,480.4	2.4	과학 기술	950.7	0.2
국토 및 지역 개발	12,835.9	2.2	계	596,221.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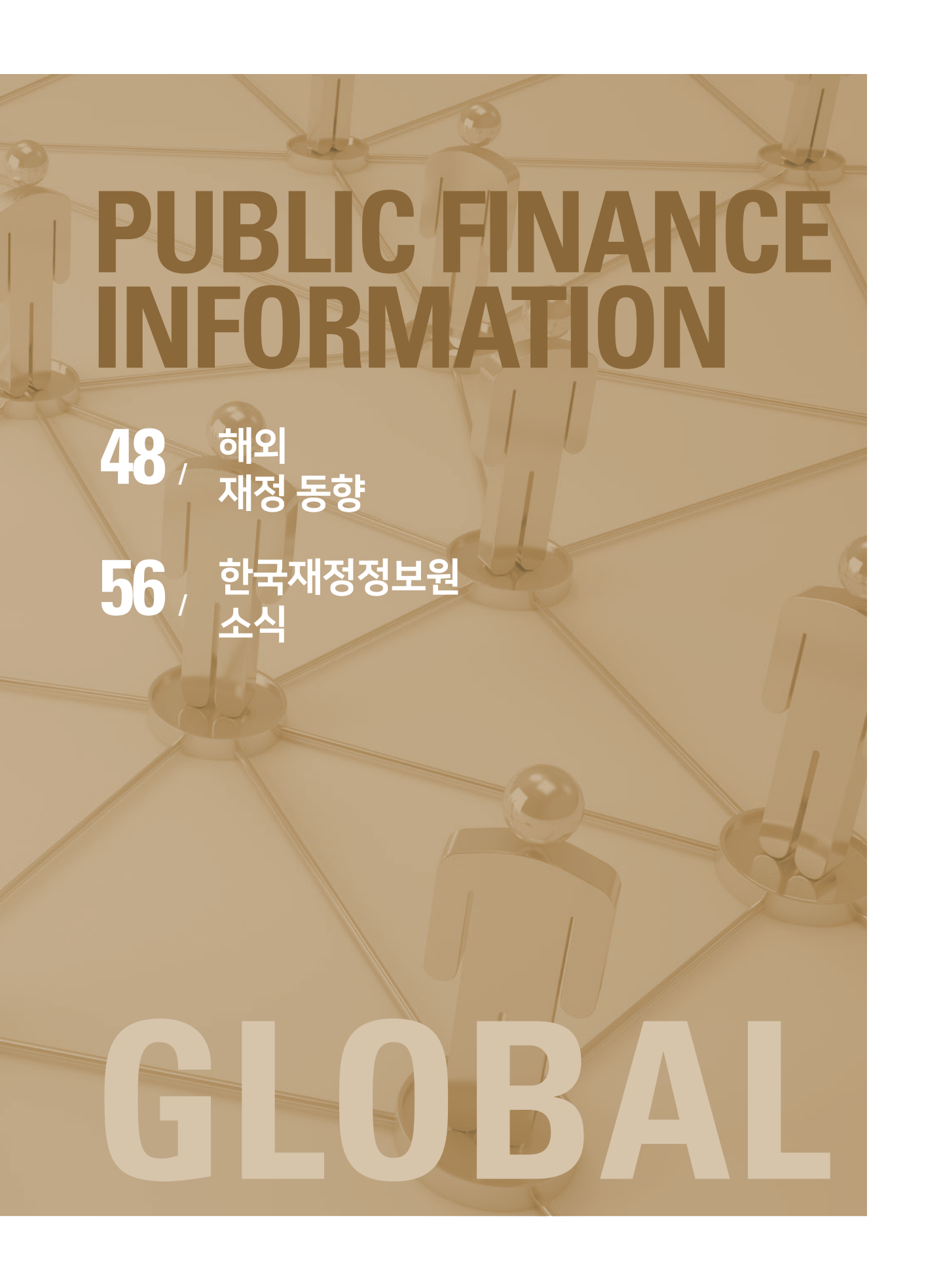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 재정(openfiscaldata.go.kr), 2017. 5. 23.

MONTHLY

동향과 소식

GLOBAL FISCAL TRENDS & KPFIS NEWS

해외 재정 동향과
한국재정정보원의 새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48 / 해외
재정 동향

56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GLOBAL



해외 재정 동향

해외 재정 동향

저소득 국가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경제 상황을 고려한 자원 조달 방식을 검토할 필요

- IMF, Can They Do it All? Fiscal Space in Low-Income countries (2017.5.5.)

● IMF는 저소득 국가들의 재정 여력(fiscal space)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

- ▶ UN이 2015년에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¹⁾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국가도 대규모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저소득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증가시켜야 하는 연평균 투자액은 \$4,000억(GDP의 50%)에 달함(Schmidt-Traub, 2015)
- ▶ 저소득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를 고려하더라도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저소득 국가가 과연 SDGs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재정여력²⁾에 대한 추정이 필요함
- ▶ 재정여력을 설명하는 요소를 거시경제 불확실성, 자원 조달 방식 및 정책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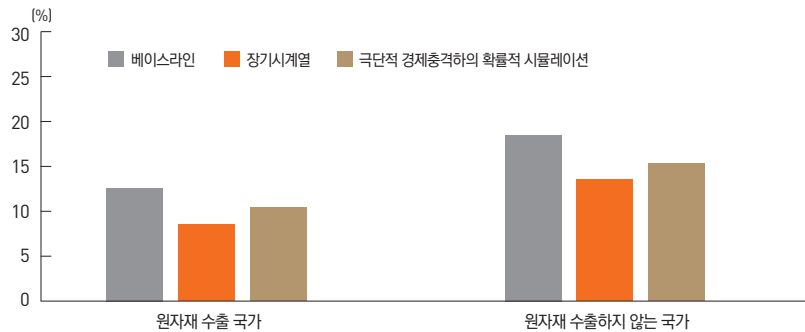
●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재정여력에 미치는 영향

- ▶ 2003~2014년까지 과거의 상황을 고려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하에서 재정여력의 중간값은 GDP의 16%였고, 원자재 수출국은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른 성장률 충격에 대한 익스포저 때문에 다른 저소득 국가보다 5%p이상 낮았음
- ▶ 1996~2014년까지 장기 시계열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경제 충격의 분산이 베이스라인보다 크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하에서 추정된 재정여력의 2/3에 그쳤고, 원자재 가격 하락세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원자재 수출국에서 재정여력이 더 크게 감소
- ▶ 경제 충격이 드물게 발생하지만 영향력이 매우 크다면, 이때의 재정여력은 베이스라인하의 재정여력보다 최대 18% 낮음

1) 2030년까지 경제성장의 지속, 사회 발전, 환경 보존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제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음. 모든 형태의 빈곤 종결, 복지 증진, 물과 위생의 보장 및 지속가능한 관리, 사회 기반 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 생물 다양성 유지와 자원의 보존 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

2) 재정여력은 채무 안전 수준(safe debt level)과 현재 채무 수준의 차이로 계산

그림 1. 저소득 국가의 재정 여력(GDP 대비 비중, 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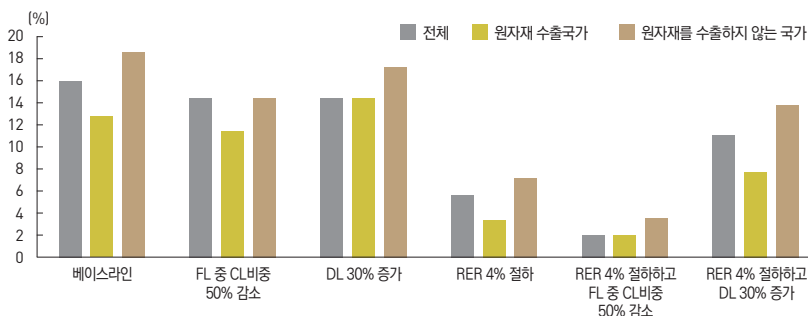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IMF 자체 추정

● 재원 조달 방법과 실질 환율이 재정여력에 미치는 영향

- ▶ 국가의 재정여력은 금리차이 및 양허성/비양허성 차관 비중에 따라 좌우됨
- ▶ 양허성 차관이 아닌, 대외 채무 및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
- ▶ 양허성 차관의 50%를 비(非)양허성 차관인 대외채무로 변경하면 재정여력이 크게 감소하며 특히 원자재 수출국이 아닐 경우 재정여력은 25%가 감소함
- ▶ 반면 양허성 차관의 비중은 유지한 채 대외 채무를 국내 채무로 변경하면 원자재를 수출하지 않는 국가의 재정 여력은 영향받지 않으며 원자재 수출국의 재정여력은 오히려 상승함
- ▶ 실질환율이 연평균 4% 절하되면 재정여력은 72%까지 감소하고 대외채무로의 전환은 이 효과를 증폭시켜 재정여력을 GDP의 2%까지 감소시킴

그림 2. 재원 조달 방식과 실질환율에 대한 서로 다른 가정하의 저소득 국가 재정여력 (GDP 대비 비중, 중간값)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IMF 자체 추정

1. 시뮬레이션은 저소득국가 26개국 샘플에 근거하여 다섯가지 케이스가 고려됨. (i) 총대외채무 중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감소 (ii) 외화 표시 채무 감소(기존의 양허성/비양허성 차관 비중은 일정하게 유지)에 대응하여 자국통화 표시 채무가 30% 증가 (iii) 평균 실질환율 절하율이 4%(베이스라인의 종합적 재원 조달방식 유지) (iv)평균 실질환율 절하율이 4%이며 양허성 차관의 50% 감소를 수반함 (시나리오 (i)), (v)평균 실질환율 절하율이 4%이며 국내 채무가 30% 증가 (시나리오 (ii)), CL-양허성 차관, DL-국내 채무, FL-대외 채무, RER-실질실효환율



해외 재정 동향

GLOBAL FISCAL TRENDS



해외 재정 동향

- ▶ 국가의 재정여력은 금리차이 및 양허성/비양허성 차관 비율에 따라 좌우되며, 특히 미국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서 달러강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저소득 국가의 금융 제약이 강화됨

● 정책 시나리오가 재정 여력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투자 증대와 국내 수입 조달(Domestic Revenue Mobilization, DRM)로 나누어 분석

- ▶ 지난 15년간 저소득 국가에서는 한계투자생산성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인프라 투자 확대가 경제성장의 견인, 재정여력의 확보로 이어졌으나, 장기에는 이러한 효과가 감소하여 재정여력이 공공투자의 규모보다 투자의 효율성에 좌우됨
- ▶ (공공투자 증대 정책) 재정승수를 1.2(공공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경우)와 0.6(공공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경우)으로 가정하고 실증분석한 결과, 투자 효율성이 높은 경우 재정여력이 80% 이상 증대
- ▶ (국내 수입조달정책) 수입이 1%p 증가할 때마다 기초재정수지는 GDP의 0.2%씩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 수입조달은 재정여력을 증가시킴

◆ 시사점

저소득 국가와 달리 한국은 높은 경제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배분의 효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음. 사회 발전, 지속적인 경제성장, 환경 보존의 목표를 고루 달성하기 위해 중복 투자 지양, 공공 투자 효율성 제고, 경제 불확실성 제거 등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 있음

미국의 장기 재정 문제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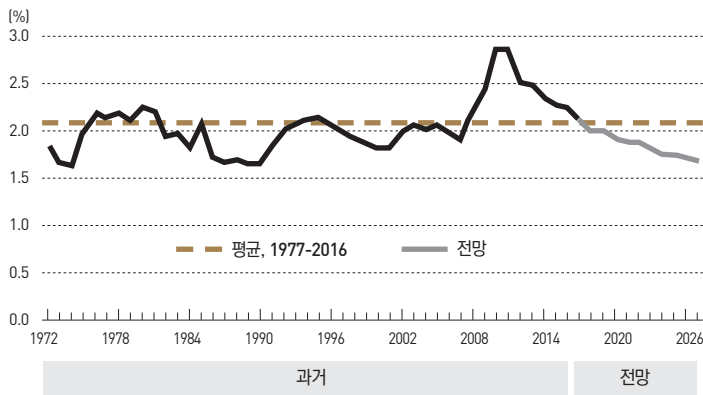
- CBPP³⁾, Low-Income Programs Not Driving Nation's Long-Term Fiscal problem(2017.2.21.)

● 미국의 장기 재정 전망에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 현재 미국 내에서 보건의료(health care)를 제외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지출은 2008년 불황 이후 크게 감소하였고, GDP 대비 비중은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이전 보다 낮은 편임
- ▶ 보건의료를 제외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의 지출 수준이 2018년에는 지난 40년 평균보다 더 낮아질 것이며 향후 10년간 GDP 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 이러한 추세는 국가의 장기 재정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미국의 싱크탱크

그림 3. 보건의료를 제외한 저소득층 지원 지출은 지난 40년 평균을 하회할 전망



※출처 : 2015년까지 미 예산관리국(OMB) 데이터, 2015년 이후 미 의회예산처(CBO) 전망 자료

- 저소득층 보건의료 지원 프로그램 지출은 2008~2011년 경기 불황 시기에 크게 증가했다가 2012년 이후 GDP대비 비중이 감소하였고 향후 10년간은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주요 원인은 의학의 발전,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비용 증가와 고령화
 - ▶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지출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믿음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입법행위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 SNAP(푸드 스탬프),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 보장, 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의 보험료 지원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은 건강보험, 거주,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 트럼프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예산 삭감 계획은 이러한 성과를 위협할 수 있음
- 보건의료를 제외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지출은 과거 40년간 GDP의 2%를 기록했으며 앞으로는 더 감소하여 경제 규모 대비 비중이 작아질 것임
 - ▶ 저소득층을 위한 의무지출 비중은 과거 40년간 평균 GDP 대비 1.3%였던 것에 비해 소폭 상승하여 2017년 1.7% 수준이 되었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의무지출이 증가했으나 그 이후는 감소세임
 - ▶ 향후 10년간 보건의료를 제외한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GDP의 1.2%까지 하락할 것이며, 2024년까지 과거 평균치를 하회할 것
 - ▶ 보건의료를 제외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합은 GDP의 2.1%를 차지하여 과거 40년 평균 수준이고 향후 10년간 지출은 점차 감소하여 GDP의 1.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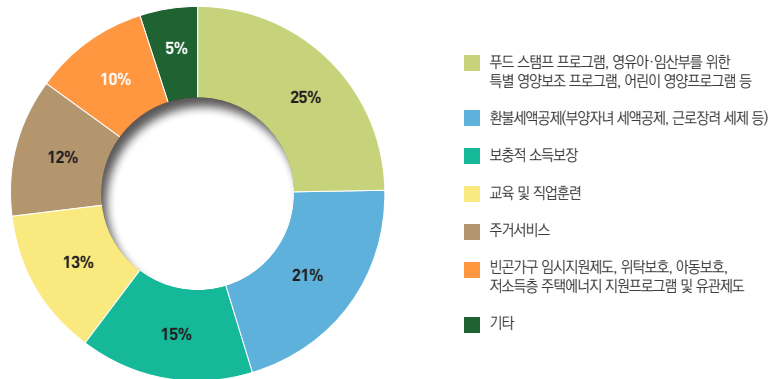


해외 재정 동향



해외 재정 동향

그림 4.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제외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지출 구성(2017)



※주의: 수치의 총합은 반올림 때문에 100%가 아님 ※출처: 미 의회예산처(CBO)

●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의료 프로그램 지출 비중은 경제 규모 대비 확대

- ▶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의료 프로그램 지출은 2017년 GDP대비 2.5%에서 2027년 2.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고령화, 의학의 발전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 상승 때문에 메디케이드 비용은 향후 GDP 성장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

〈표 1〉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지출(GDP 대비 비중)

	1977-2016 평균	2010	2017	2027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제외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2.1	2.9	2.1	1.7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의료 프로그램	1.2	2.2	2.5	2.9
총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3.3	5.0	4.7	4.6

※출처: 미 의회예산처(CBO), 미 의회예산국(MBO) 자료에 기반한 CBPP 자체 추정

◆ 시사점

GDP 대비 저소득층 보건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비중은 증가해도 보건의료를 제외한 프로그램 지출은 감소하여, 저소득층 지원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이 미국의 장기 재정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며 장기 재정문제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임

영국, 2017년 춘계예산안 및 세출 예산안 발표

- HM Treasury, Spring Budget 2017(2017. 3. 8.)

-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17-18(2017. 4. 19.)

- 2017/18 회계연도 영국의 예산안에는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되고 공공 부채 감축, 세율 인하,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짐
- ▶ 2016년 영국이 EU 탈퇴 투표 이후 취임한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 3월 8일 하원에서 2017/18 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예산안을 발표
- ▶ 예산안 발표에서 해먼드 장관은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 여파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며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가을 예산안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상향 조정(1.4% → 2.0%)
- ▶ 이번 예산안은 공공부채 감축,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율 인하,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핵심
- 올해 전망한 '2016/17 회계연도 공공부채'는 517억 파운드(GDP대비 2.6%)로 당초 전망치(682억 파운드)보다 감소했고 2017/18년 총공공지출예산은 8,024억 파운드(GDP대비 39.6%)로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 (공공부채) 2017/18 회계연도에는 583억 파운드(GDP 대비 2.9%)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향후 5년에 걸쳐 168억 파운드(GDP 대비 0.7%)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 지원을 위한 공공재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겠다는 것
- ▶ (공공지출) 공공지출 중 사회보장이 2,450억 파운드로 가장 비중이 크고, 보건 부문이 1,490억 파운드로 두 번째로 큰 규모임
 - 이러한 공공지출 구조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연장과 같은 인구구조 동향에 지속적으로 영향받을 것
- 2022년까지 재정을 균형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이행하고 있음
- ▶ 중기목표는 경기 조정 재정적자를 GDP의 2% 이하로 낮추고 2020/21 회계연도까지 부채를 하향세로 돌리는 것이며,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유연함과 재정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책임을 균형있게 견지해야 함
- ▶ 중기 목표는 예상보다 2년 빨리 달성될 것이며 2020/21 회계연도의 경기 조정 공공부문 순부채는 GDP의 0.9% 수준에 이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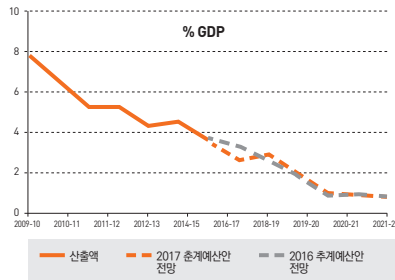
해외 재정 동향



해외 재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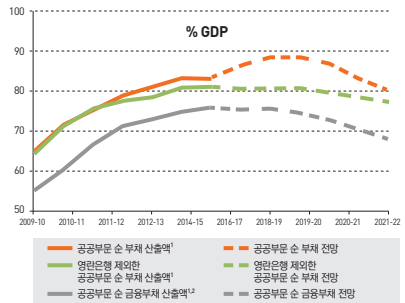
- ▶ 영국 정부는 EU 안정성장협약에 명시된 재정적자 목표 3.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전망에 따르면 이 목표는 2016/17 회계연도에 달성되고 향후 이 수준이 유지 될 것으로 예상
- ▶ 공공 부문 순부채의 GDP 대비 비중을 감소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란은행을 제외한 공공 부문 순 부채와 공공 부문 순 금융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2018/19 회계연 도부터 모두 감소

그림 5. 경기 조정 공공 부문 순 부채



※출처 : 영국 예산책임청(OBR)

그림 6. 공공 부문 부채



※출처 : 영국 예산책임청(OBR), 영국 통계청(ONS)

1. 2015-16년 산출액은 영국 통계청에서 2017년 2월 22일에 발간한 2017GDP를 기반으로 예산책 임청이 산출한 수치
2. 영국통계청 통계치

- 영국의 생산성은 프랑스, 미국,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를 개선하 기 위해 투자와 교육을 강화, 국가 생산성 투자펀드 지원, 첨단 기술 분야 지원 등을 결정
- ▶ 정부는 견습생 3백만 명 지원을 통해 취업기술교육을 강화, 평생학습 지원에 4천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우수 공립학교인 그래머스쿨 발전에 연간 5천만 파운드 지원, 특수학교 140 여 개 신설 예정
- ▶ 2017/18 회계연도부터 2021/22 회계연도까지 국가 생산성 투자펀드(NPIF)에 230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경제 인프라 구축, 영국 교통혼잡 완화, 기술 진보를 도모
- ▶ 산업전략도전펀드(ISCF)에 2억 7천만 파운드를 할당하여 전기차 개발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배터리 개발, 해양에너지, 원자로, 우주공학 등 위험 분야에 사용되는 로봇공학 기술, 보건 향상을 위한 신약 제조 기술 등을 지원
-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역시 낮춰 가계의 부담을 완화
- ▶ (법인세) 2017년 4월부터 영국의 법인세율은 20%에서 19%로 인하할 예정이며 이는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이 될 것

- ▶ (개인소득세) 비과세 인적공제 한도는 현 1만 1천 파운드에서 1만 1천5백 파운드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2010년 대비 75% 상승한 수준임
- ▶ 중간세율인 40%가 적용되는 과표를 4만 3천 파운드에서 연간 4만 5천 파운드로 높여 일부 고소득층의 세 부담 완화

● 2018년 4월부터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부과 예정

- ▶ 아동 비만, 당뇨 등을 줄이기 위해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해당 조세 수입(약 10억 파운드로 추정)을 교육부의 학교 스포츠 활동 운영에 투자할 예정
- ▶ 청량음료 업계에서 이미 설탕 함유량을 조절하고 있어 아동 건강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영국비만협회, 영국 공중보건 로열 소사이어티 등 일부 기관들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2017/18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은 4월19일에 하원에 제출됨

- ▶ 세출예산안은 국민보험기금 등 비(非)세입성 지출을 제외한 5,764조 파운드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 및 계획을 담고 있음
- ▶ 각 부처별 세부 지출 계획안을 여름에 제출 예정

〈표 2〉 전년 대비 총재원 조달 계획

(단위 : 백만 파운드)

	2017/18 예산안 ²	2016/17 ¹	2015/16 ¹
총 자원/자본 부처 지출 한도 ³	312,317	317,941	300,282
총 자원/자본 연간관리지출	203,366	262,224	264,148
총 순예산	515,683	508,164	564,430
총 비예산지출	60,797	59,023	67,260
총 자원/자본 지출안	576,480	639,187	631,690
현금 조정을 위한 자원	-83,891	-159,644	-184,076
총 순현금 소요액	492,590	479,543	447,614

1. 2015~16 산출액과 2016~17 예산안은 2017~18년 예산안 구조를 반영하여 정부 조직의 분류, 이전과 같은 변화에 맞추어 조정되었음

2. 독립 기구의 숫자는 잠정임. 최종안을 확인하려면 출간된 예산안 참고

3. 숫자들에는 의회 투표로 선발된 대학에 수여되는 기금을 포함되어 있음

◆ 시사점

영국은 EU 탈퇴 여파를 견뎌내기 위해 생산성 강화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세율을 낮춰 기업과 가계의 생산·소비 활동을 촉진하는 등 경제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있음. 또한 예산안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세가 19%로 인하되면 서유럽 최저수준의 법인세율을 보유했게 되어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 있는 투자처로 어필할 수 있음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중남미 공무원, 한국재정정보원 방문

- 5월 23일 칠레,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중남미 공무원 일행은 한국 정부와 국제기구인 미주개발은행(IDB) 간 협력을 통해 재정정보원을 방문
- 이번 방문은 한국의 우수한 전자정부/ICT 견학 및 체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 개혁 경험 및 dBrain 구축 경험을 공유

dBrain시스템 사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방문 실시

- dBrain운영본부는 6월에 3차에 걸쳐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스템 활용도가 높은 기관(국토교통부, 산림청, 조달청)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
- 인터뷰에는 방문 기관과 산하 공공 기관 및 지자체 국유재산 실무자 35명이 참여하였으며, 시스템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의견과 추가 연계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
 - ※ 인터뷰 외 사전에 배포한 설문지를 통해 총 22개 기관 68명의 의견을 수렴
- 금번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된 사용자 의견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dBrain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임

e나라도움 전면 개통에 앞서 사용자 검토 간담회 실시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단은 e나라도움의 전면 개통('17. 7. 1)을 앞두고 중앙관서 및 지자체 업무 담당자, 민간·공공 기관 보조사업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용자 불편 사항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실시
 - ※ e나라도움은 2017년 1월 보조금 집행기능 위주로 1차 개통한 데 이어 오는 7월 1일 중복·부정 지급 방지, 정산, 통계, 정보 공개 등 26개 단위 업무를 포함하여 전면 개통할 예정
- 간담회를 통한 사용자 불편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이를 반영한 기능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

제2차 재정경제 부문 연계 기관 협의회 개최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산하·연계 기관 보안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 부문의 정보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회가 6월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개최
- 본 협의회에서는 △국정원 新보안관제 시스템 기관 활용방안 및 추후 계획 소개, △도·감청 장비 시연 및 활용 방안 협의, △해외 보안 컨퍼런스 추진 계획 공유 및 협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룸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1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 예정

- 한국재정정보원은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재정 혁신과 재정 정보 인프라」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
- ‘한국재정정보원의 성과와 발전 방향(김미량 성균관대학교 교수)’, ‘재정 혁신과 재정 정보(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한 2개의 주제로 발제가 진행되고 이후 재정 및 정보화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

※ 일시: 2017. 7. 3.(월) 15:30~18:0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재정혁신과 재정정보 인프라

일시 / 2017.7.3(월) 15:30~18:0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F20)

주최 /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재정정보원이 첫 돌을 맞이하였습니다. 국가 재정정보 인프라의 중추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 업무 발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재정은 국민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듬어야 합니다. 하지만 씹씹이를 무한정 늘릴 수 없기에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여 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재정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재정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정정보가 정책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재정운용에 관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바 소임이 결코 작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 및 정보화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재정혁신과 재정정보 인프라」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준비 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한국재정정보원이 올곧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한국재정정보원장 이 원 식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재정 전문 연구기관

재정의 통합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과 소통하는 재정 운영 지원

월간 나라재정 2017년 6월호
통권 제6호(발행번호)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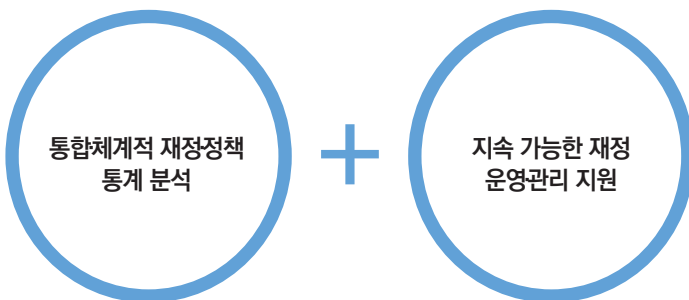
발행인
이원식(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편집위원장
박용주(한국재정정보원 연구본부장)

편집위원
강영규(기획재정부 과장)
최병호(부산대학교 교수)
이원희(한경대학교 교수)
연훈수(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박소영(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한승희(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김도일(한국재정정보원 연구원)

디자인제작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 재정 통계 분석 기법 개발
- 재정 통계 분석 및 재정 정보 공개

- 각종 재정 사업 평가 및 관련 연구
- 재정 정책 전반 연구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